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수용하고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해 안전한 고체 산적화물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상화(液狀化)물질의 정의 개정(안 제2조)

고체화물의 운송 중 액체로 변해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액상화물질)의 정의에 고체화물 위에 현탁액(물과 미세한 고체, Slurry)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포함해, 액상화물질에 적용되는 운송기준을 현탁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도 적용함

나. 액상화물질의 측정 등 기준과 절차에 국제규범 적용(안 제8조)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험, 수분함량 관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함

다. 비응집성(非凝集性)물질의 종류 최신화(안 별표1)

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운송 중 미끄러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체화물(비응집성물질)의 종류를 최신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액상화물질”이란”을 ““액상화(液狀化)물질”이란”으로, “물질을”을 “물질 또는 고체화물 위에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slurry)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험 및 수분함량 관리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과 이 절의 규정이 다른 때에는 해당 국제규범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규칙의 규정이 국제규범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집성물질(제16조의2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의 물질은 건조될 때 비용집성물질로 취급한다. 다음 각 호 외의 모든 물질은 응집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규칙 제16조의2에 정하는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1. 불산알루미늄
2. 질산암모늄
3. 질산암모늄계 비료
4. 질산암모늄계 비료(고체화학물질인 것)
5. 질산암모늄계 비료(UN번호 2067에 해당하는 것)
6. 질산암모늄계 비료(UN번호 2071에 해당하는 것)
7. 황산암모늄
8. 붕사(硼砂), 무수물(無水物)
9. 수활석(BRUCITE)
10. 질산칼슘비료
11. 녹니석(CHLORITE)
12. 조개 껍데기(CLAM SHELL)
13. 디암모늄 인산염
14. 니켈철 슬래그, 과립형(FERRONICKEL SLAG, granulated)
15. 그을음, 납 및 아연 함유(FLUE DUST, CONTAINING LEAD AND ZINC)
16. 곡물정선부산물, 펠릿(GRAIN SCREENING PELLETS)
17. 과립상의 황산 제일철(GRANULAR FERROUS SULPHATE)
18. 납 함유 침출 잔류물(LEACH RESIDUE CONTAINING LEAD)
19. 황산 마그네슘 비료
20. 제1인산암모늄
21. 광물 농축 코팅된 제1인산암모늄
22. 인산이수소칼슘(MONOCALCIUMPHOSPHATE)
23. 과립 감람석(橄欖石)과 자갈 덩어리 산물
24. 감람석 모래
25. 가성칼륨(POTASH)

26. 염화칼륨
27. 질산칼륨
28. 황산칼륨
29. 모래, 광물 정광류, 방사성 물질, 저준위 (UN번호 2912에 해당하는 것)
30. 가공된 기름진 야채의 씨드 케이크(seed cake) 및 다른 잔류물(고체화학위험물질에 해당하는 것)
31. 가공된 기름진 야채의 씨드 케이크 및 다른 잔류물(액상화물질 또는 고체화학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
32.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 혼합물
33. 리티아 휘석, 가공한 것(SPODUMENE, UPGRADED)
34.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펠릿
35. 과인산염, 삼중과립(SUPERPHOSPATE, triple, granular)
36. 합성 이산화규소
37. 타피오카
38. 요소
39. 첨가제 및/또는 결합제를 포함한 목재 펠릿
40. 첨가제 및/또는 결합제를 포함하지 않은 목재 펠릿
41. 탄화(炭化)목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액상화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10. “ <u>액상화(液狀化)물질</u> ”이란 ----- ----- ----- ----- <u>물질 또는 고체화물 위에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slurry)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u> ---.
11. ~ 27. (생 략)	11. ~ 27. (현행과 같음)
제18조(적용) (생 략)	제18조(적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u>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험 및 수분함량 관리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과 이 절의 규정이 다른 때에는 해당 국제규범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규칙의 규정</u>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① ~ ③ (생략) ③·④ (생략)	<u>이 국제규범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u>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